

# 안산 한신더휴 |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

#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안산시 및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</li> <li>②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※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자의 자녀 :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</li> <li>- 재혼배우자의 자녀 :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
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해당지역(안산시 2년 이상)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</li> <li>② 잔여세대 발생 시 : 기타지역 거주자 공급[안산시 2년 미만 거주자,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 거주자]</li> </ul>
경쟁시 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쟁이 있는 경우,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가점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</li> <li>▶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</li> <li>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</li> </ul> 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신과 입양의 경우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</li> <li>-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(계약)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</li> <li>-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</li> </ul>

#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가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5명 이상	40	• 자녀(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4명	35	
		3명	30	
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• 영유아(태아를 포함한다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2명	10	
		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•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 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
		5년 이상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5년 미만	10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•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※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
		5년 이상 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 5년 미만	5	
입주자 거주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

(3) :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
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 
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
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※ 동점자 처리 :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